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11. 26(목) 10:00

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
(도시안전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3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.

2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노후 건축물의 외관 개선 및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으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
 - 2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제1항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: 2020. 10. 16. ~ 2020. 11. 5.(20일 이상)
 - 2) 규제사전심사: 별도시행(기획예산과)
 - 3) 부패영향평가: 별도시행(민원감사담당관)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시행(여성가족과)

4. 검토의견

가. 현행 조례 개요

동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2008년 10월 10일 제정된 이후 2016년 3월 일부개정 되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,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노후 건축물의 외관 개선 및 옥외광고물 정비 지원을 목적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사항

- 가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의 다른 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을 살펴보면
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개정으로 2013년 「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에 간판개선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
 - 「도시재생법」 제정으로 2018년 「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건축물 개·보수 및 정비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
- 서울시 관련 조례 현황
 - 「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」 폐지('18.07.19.)

다. 검토의견

- 가로환경개선 지원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이 마련되어 우리 구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중복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관계 법령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4조의3(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)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(이하 "정비시범구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·크기·색깔,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시·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등과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27조(보조 또는 융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
2.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비
3. 건축물 개수·보수 및 정비 비용
4. 전문가 파견·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
5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
6.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
7.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
8. 마을기업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
9.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11. 26(목) 10:00

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
(도시안전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3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.

2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노후 건축물의 외관 개선 및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으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
 - 2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제1항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: 2020. 10. 16. ~ 2020. 11. 5.(20일 이상)
 - 2) 규제사전심사: 별도시행(기획예산과)
 - 3) 부패영향평가: 별도시행(민원감사담당관)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시행(여성가족과)

4. 검토의견

가. 현행 조례 개요

동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2008년 10월 10일 제정된 이후 2016년 3월 일부개정 되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,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노후 건축물의 외관 개선 및 옥외광고물 정비 지원을 목적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사항

- 가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의 다른 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을 살펴보면
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개정으로 2013년 「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에 간판개선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
 - 「도시재생법」 제정으로 2018년 「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건축물 개·보수 및 정비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
- 서울시 관련 조례 현황
 - 「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」 폐지('18.07.19.)

다. 검토의견

- 가로환경개선 지원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이 마련되어 우리 구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중복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관 계 법 령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4조의3(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)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(이하 "정비시범구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·크기·색깔,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시·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등과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27조(보조 또는 융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
2.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비
3. 건축물 개수·보수 및 정비 비용
4. 전문가 파견·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
5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
6.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
7.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
8. 마을기업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
9.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